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[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] 검토보고서

의 안	제3430호
번 호	세3430오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O 사업목적

-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고령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상과 정서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공공목욕시설 건립 필요
- 공공목욕탕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함.

O 의결대상 재산

구 분	물 건 종 류	단 위	면적(m²)	내 역	부서명
취 득	· 왕 튜 - - 건 물	동	297	 제목: 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 소재지: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22-4 취득규모: 연면적 297㎡ (지하1층 지상1층) 주요시설 지하1층: 기계실(보일러실) 지상1층: 목욕탕, 탈의실, 화장실, 카운터, 휴게실, 창고 · 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 	대곶면
				· 기준가격 : 1,643,000천원 (사업비) · 취득예상가격 : 1,643,000천원 (사업비)	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취득자산의 기준가격이 1,643백만원으로 10억이 넘는 중요재산에 해당함에 따라 「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임.
- 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 시 철거비, 신축비 및 운영비(인건비) 등 중·장기적으로 많은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 예측 수요 및 투입 대비 사업의 효율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.